

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및 PQ 설명



목 차

I.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

1. 시공 및 설계분야 입찰참가자격
2. 공동수급체 구성

II.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(PQ) 주요 내용

1. 평가 기준금액 완화
2. 업종실적 만점계수(B) 완화
3. 중소기업참여도 참여지분율 조정

I.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

I.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



1. 시공 및 설계분야 입찰참가자격

구 분	입찰참가자격
1) 시공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표사) 토목(또는 토목건축)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,403,855백만원 이상인 자 ☞ 입찰경쟁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금액(주공종 추정금액) 1/5의 70%이상 시공능력보유자 -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 -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-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- 일반소방시설공사업(전기 및 기계)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
2) 설계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일반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일반)으로 등록한 자'로서 다음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(등록)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설부문: 도로·공항, 교통, 토질·지질, 항만·해안, 구조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측량·지적 * 설비부문: 설비 * 기계부문: 일반산업기계 * 환경부문: 수질관리 -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개설(등록)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보통신부문: 정보통신 -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설계업(종합 또는 전문 1종)을 등록한 자 -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

1.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



2. 공동수급체 구성

구 분	공동수급체 구성 조건
1)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제한	<p>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2개사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</p> <p>※ 관련기준 : 조달청 「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」 제8조의2 제3항</p>
2) 구성원 수	<p>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구성원 12인 이하(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4% 이상) 구성 가능</p> <p>* 설계분야 구성원은 구성원 수에 미포함</p> <p>단, 지역기업은 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20인 이하로 추가 가능(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 300억 원 이상 참여)</p> <p>※ 관련기준 : 국토부 고시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」</p>

Ⅱ.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주요 내용

1. 평가 기준금액 완화

▶ 입찰경쟁성 확보 및 지역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 **평가 기준금액 (주공종 추정금액)을 1/5로 완화**

☞ 사전심사의 평가대상 토목공사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의 10.5조원 임에도 불구하고 2조원으로 적용하여 평가

※ (당초 기준 적용) 대표사 자격 충족업체 없음, PQ통과 불가

▶ 평가 기준금액 완화에 따라 지역·중소업체 **참여지분율 확대 효과**

☞ 평가 기준금액 완화(10.5조원→2조원)로 **시공비율이 5배 확대**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따라 지역·중소업체가 시평액 한도 보다 높은 지분율로 참여 가능

2. 업종실적 만점계수(B) 완화

▶ 적정 경쟁성 확보를 위해 업종실적 **만점계수(B)**을 '5' → '2' 완화

< 업종실적 산식 >

대상공사	공종	보정계수(a)	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
고난도포함공사, 실적제한, 일반공사, 1등급공사	토목 건축 기타	a=1.00	<p>평점 = 실적계수(C) × 11</p> <p>실적계수(C) = (최근 5년간 업종실적) / 만점계수(B)</p> <p>(단, 실적계수(C)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)</p> <p>* 만점계수(B) = (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) × 2 × 보정계수(a)</p>

3. 중소기업참여도 참여지분을 조정

▶ 지역중소기업의 참여 실효성 확보 위해 **중소기업참여도 평가기준 완화**

☞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국토부 '가덕도공항 지역기업 우대기준' 지역업체 가산비율과 동일하게 적용

< 우리청 PQ기준 중소기업참여도 비율 조정 >

현행	조정	점수
10% 이상, 20% 미만	1% 이상, 5% 미만	1점
20% 이상, 30% 미만	5% 이상, 10% 미만	2점
30% 이상, 40% 미만	10% 이상, 20% 미만)	3점
40% 이상	20% 이상	4점

감사합니다.